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620호, 제1621호, 제1622호

다. 제출일자 : 2020. 5. 29.

라. 회부일자 : 2020. 6. 9.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	83,024	83,024	91,047	82,195	209	8,641	90.3%

- 세입예산현액은 830억 2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910억 4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0.3%인 821억 95백만원을 수납하고 2억9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86억 41백만원은 미수납됨.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9	359,317	4,452	78,667	-	47 (-47)	-	442,435	402,472	4,945	147	4,798	35,018 (7.9%)

- 당초 예산액 3,593억 1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52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786억 6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24억 35백만원으로, 이 중 90.9%인 4,024억 72백만원을 지출하고 1.1%인 49억 4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50억 1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47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에서 발생함.

○ 변경

- 예산 변경은 없음.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8건에 786억 66백만원으로
-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 752억 25백만원
-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계약해지처분 취소 소송 26억 98백만원
- 남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6억 11백만원 등임.

○ 이체

- 예산 이체는 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48백만원, 사고이월은 18건에 47억 98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4,424억 35백만원 대비 1.1%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50억 1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4,424억 35백만원 대비 7.9%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9	442,435	35,018	7.9%	
2018	197,646	4,074	2.1%	
2017	219,895	7,962	3.6%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91억 46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58억 72백만원

나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9	25,120	4,986	-	15 (-15)	-	-	30,106	4,435	23,621	23,077	544	2,050 (6.8%)

- 당초예산액 251억 2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8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1억 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4억 35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78.5%인 236억 2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0억 50백만원이 발생되었음.

2)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 예산의 변경은 1건에 15백만원으로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에서 발생함.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3)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1건에 5억 44백만원이고, 명시이월은 6건에 230억 77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301억 6백만원 대비 78.4%임.

4)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0억 50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01억 6백만원 대비 6.8%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9	30,106	2,050	6.8%	
2018	9,362	2,014	21.5%	
2017	20,715	333	1.6%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0억 50백만원 등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	3,957	3,957	6,271	6,271	-	-	100%

○ 세입예산현액은 39억 57백만원이고, 실수납액은 62억 71백만원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9	55,487	52,974	-	-	-	-	108,461	89,669	14,376	1,490	12,886	3,658 (3.4%)

○ 예산액 554억 8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9억 7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84억 61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96억 69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인 143억 7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36억 5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건에 14억 90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128억 87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1,084억 61백만원 대비 13.2%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6억 5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084억 61백만원 대비 3.4%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19	108,461	3,658	3.4%	
2018	130,035	8,972	6.9%	
2017	55,481	909	1.6%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6억 22백만원
- 보조금 정산잔액 : 35백만원 등

라 . 도시 개발 특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	186,286	186,286	168,200	168,200	-	-	100%

- 세입 예산현액은 1,862억 86백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682억 원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9	719,196	110,225	-	2,024 (-2,024)	-	-	829,422	638,398	135,721	74,731	60,990	55,302 (6.7%)

- 예산액 7,191억 9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02억 2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94억 22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383억 98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인 1,357억 2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553억 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예산 변경은 12건에 20억 24백만원으로
- 올림픽대로~여의도 진입램프 설치 1건에 2억 38백만원
- 성산대교 성능개선 1건에 3억 53백만원
- 월드컵대교 건설 2건에 7억 39백만원 등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37건에 747억 3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4건에 609억 90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8,294억 22백만원 대비 16.3%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53억 2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8,294억 22백만 대비 6.7%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9	829,422	55,302	6.7%	
2018	792,468	51,577	6.5%	
2017	700,814	34,101	4.9%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억 95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549억 6백만원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19	571,474	5,211	126,742		9,790	425,797		3,934	571,474	77,994	491,954			5	1,521	
2018	513,163	2,040	113,901		7,401	389,806		15	513,163	82,149	425,797			6	5,211	
2017	415,089	191	100,500	2,174	6,166	259,297	46,666	95	415,089	23,239	389,806			4	2,040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67억 42백만원, 이자수입 97억 90백만원, 예치금회수 4,257억 97백만원, 전년도이월액 52억 11백만원, 기타 39억 34백만원을 합한 5,714억 74백만원이며,
- 사업비 779억 9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2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919억 54백만원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바 .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차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지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19	54,977	-	-	541	14,491	-	39,945	54,977	36,905	18,072	-	-

- 수입은 이자수입 5억 41백만원, 예치금회수 144억 91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399억 45백만원을 합한 549억 77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67.1%인 369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0억 72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	83,024	83,024	91,047	82,195	209	8,641	90.3%
2018	80,576	80,576	98,298	89,133	388	8,778	90.7%
2017	156,678	156,678	170,401	151,453	299	18,649	88.9%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830억 2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910억 4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0.3%인 821억 95백만원을 수납하고 2억9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86억 41백만원은 미수납됨.

나) 세수추계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10%로 총 80억 23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2018년 결산 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177억 22백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수추계 차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차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7,433	45,684	43,785	△1,748	○ 지하도상가 유동인구 감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재산가액(임대료) 감소
212-08 기타사업수입	11,851	10,239	10,072	△1,612	○ 2019년 신규 공동구(마곡) 인수에 따른 점(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분 및 인건비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세입 추계 ○ 마곡 공동구 인수 지연('20.1.) 및 인건비 인상률 1.8%로 조정 등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액 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2,483	2,483	2,483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사업부지 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매각요청 민원이 있어 매각 ○ 비예측성 매각수입으로, 예산액과 실 징수액 간 차액 발생
224-06 그외수입	16,208	18,595	17,626	2,386	○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 중인 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증가 (대행사업비 반납액은 예측이 곤란하여 최근 n년간 평균액으로 추계하므로, 예산액과 실 징수결정액 간 차액 발생) ○ 기타 공사 및 용역의 정산액, 소송관련 비용 등 사전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차액 발생
225-01 지난연도수입	1,334	7,910	2,453	6,576	○ 지하상가 임대료, 과태료 등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차액 발생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액 474억 33백만원 대비 96.3%인 456억 84백만원을 징수결정함.
 -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의한 세입이며, 지하도상가의 유동인구 감소 및 경기 둔화로 인한 재산가액 감소 등으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기타사업수입’은 세입예산액 118억 51백만원 대비 86.4%인 102억 39백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 이는 ‘19년에 마곡 공동구 신규 인수에 따른 점(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했으나, 마곡공동구 인수 지연(‘20.1. 인수), ‘19년 인건비 인상을 1.8% 조정, ‘18년 공동구 관리비 정산액 반영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세외수입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이 같은 정산잔액을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은 인정되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사료됨.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162억 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85억 95백만원으로 23억 86백만원이 증가함.
 - 그외수입은 지하도상가 관리비, 포장공사 맨홀정비 청구수입,

도로사업소 건설기계 사용료,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정산금 반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각종 반납금 등으로 구성됨.

- 따라서, 세목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이 중 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 대행사업비 반납액 등이 포함된 건설혁신과의 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12억 69백만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세입추계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음.

[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세부내역별 예산액-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차액	사유
합계		16,208,670	18,595,053	2,386,383	
1	안전총괄과	-	39,252	39,252	세계100대 회복력도시 지원금 : 35,565천원, 초과근무수당, 파견수당 과오지급분(3,687천원) 반납
2	상황대응과	-	1,618	1,618	과년도 가족수당 수령 반납금(1,600천원) 및 급여 착오 과지급금(18천원) 반납금임
3	시설안전과	-	398	398	국민연금 보험료 과납 환급금외 1건
4	건설혁신과	7,754,033	9,022,709	1,268,676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청소, 경비원 인건비 감소액(5억) 및 2018년 대행사업비 반납액(17억)
5	도로계획과	-	218,549	218,549	비에측정 기타수입 -소송비용:12건(118,337천원) -공사비정산반납:2건(100,004천원) -연가보상비반납:1건(106천원) -전문직위수당반납:1건(102천원)
6	도로관리과	4,003,777	69,276	△3,934,501	도로관리과에서 6개도로사업소 부과징수액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나 실제 징수 및 수납은 6개 도로사업소에서 시행
7	도로시설과	4,450,860	3,912,670	△538,189	○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 발생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 대행사업을시행하고있는서울시설공단내부인사이동에따른인건비(인사이동,휴직등)차액반납및시설물정비공사낙찰차액등으로인하여예산대비실제수납액차이발생 ※2016~2017년징수액과2018년징수전망액의평균값으로세입추계

8	교량안전과	-	11,728	11,728	광명시 매칭 용역(광명고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산잔액 발생
9	도로사업소 (6개)	-	5,318,852	5,318,852	당해연도 불량맨홀 정비비

다) 미수납액

○ 안전총괄실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86억 41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료	18억 99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1억 67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1백만원
- 일반부담금	11백만원
- 변상금	83백만원
- 과태료	2억 55백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8백만원
- 그외수입	9억 68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52억 48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은 52억 48백만원으로 전년(47억 28백만원) 대비 5억 2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전체 미수납액의 60.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79억 11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1%인 24억 53만원에 불과하고, 매년 30% 내외의 유사한 수

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초기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참조), ‘납세태만’이 34억 53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가 28억 22백만원으로 32.7%, ‘소송계류’가 19억 79백만원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과 관련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조사해 압류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32.7%를 차지하는 “기타”는 운행제한 과태료 납기 미경과분,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보증금 이자 등 ‘납기 미도래(19억 66백만원)’와 맨홀 정비 보수 부담금 등 ‘예산 미편성(4억 56백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함.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8,641,978	100%
무재산		224,307	2.6%
행방불명		29,736	0.3%
납세태만		3,453,410	40.0%
폐업 또는 부도		92,110	1.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	0.0%
격리 또는 입원		-	0.0%

소송계류	1,979,402	22.9%
국외이주	-	0.0%
자금압박	40,619	0.5%
기타	2,822,394	32.7%

라) 결손처분

- 안전총괄실 일반회계 결손처분 총액은 2억 1천만원으로 모두 시효소멸에 의한 것임.

- 지난연도수입

2억 9백만원

[표] 일반회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불납결손액	209,794
시효소멸	209,794

- 시효소멸은 「지방세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 행사 개시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 10년, 그 외의 경우는 5년 경과 후에 발생하므로 시효소멸에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예방적 특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9	359,317	4,452	78,667	-	47 (-47)	-	442,435	402,472	4,945	147	4,798	35,018 (7.9%)
2018	182,669	3,536	11,441	45 (-45)	268 (-268)	95,053	197,646	189,120	4,452	4,267	185	4,074 (2.1%)
2017	212,987	6,497	411	8 (-8)	54 (-54)	-	219,895	208,443	3,490	-	3,490	7,962 (3.6%)

가) 개 요

- 예산액 3,593억 1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52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786억 6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24억 35백만원으로, 이 중 91.0%인 4,024억 72백만원을 지출하고 1.1%인 49억 4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50억 1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50억 18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14건([표] 참조)인데,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상황대응과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74	102	72	41.5%
2	도로계획과	도로부지(행정재산) 실태조사	8	2	6	71.0%
3	도로계획과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300	89	211	70.5%
4	도로계획과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운영	8	1	7	88.8%
5	도로계획과	도로건설사업 사후관리 및 조정식재 유지관리	70	-	43	61.3%
6	도로계획과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29,000	-	29,000	100.0%
7	도로계획과	기본경비	156	96	61	38.8%
8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추진	9,198	8,859	339	3.7%
9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	29,962	27,228	1,019	3.4%
10	도로관리과	도로함몰 예방 사업	4,908	4,305	512	10.4%
11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5,099	3,455	1,372	26.9%
12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397	1,968	429	17.9%
13	도로관리과	철도건널목(오류1, 향리3) 위탁관리	84	24	60	71.6%
14	도로시설과	노후된 대방지하보차도 환경개선(시민참여)	300	201	99	32.9%

○ 먼저,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응용 S/W, 상용 S/W)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점검, 장애복구지원, 기능 고도화 등의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1억 74백만원 중 41.5%인 7천 2백만원이 불용됨.

- 이는 당초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지사항 관리기능 개발,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수정, 재난사고 속보 발령해제 푸시알림 서비스 추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던 것

을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개발하는 것이 기간 및 품질 확보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설계 변경함에 따른 것임.

- 한편,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17년 재정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18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용역
- 사업기간 : '19.5월 ~'20.2월
- 소요예산 : 547백만원
- 사업내용
 - 다국어 재난안전 홈페이지 구축(영·중·일어 - PC·모바일 웹, 모바일 앱)
 -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교육 등 콘텐츠 보강
 - 시민안전과수꾼 양상 지원 ‘교육강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 재난안전포털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웹툰 50·카드뉴스10·동영상 3)
 - 재난현장 실무지원 앱 개발

- 다국어 재난안전 홈페이지 구축,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교육 등 콘텐츠 보강, 재난안전포털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재난현장 실무지원 앱 개발 등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유지관리 및 개선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통합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포털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 통합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포털시스템 비교

시스템명		주요기능	구축일	비고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재난상황관리 (舊 붕괴상황관리)	- 대형건축물, 교량, 공사장 등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상황 발령 및 SMS ※ 초기 붕괴사고만 관리했으나, 모든 재난사고관리로 변경('16년)	2013	내부 행정용
	재해이력정보	- 서울시에서 발생한 과거 재난 이력 등록·조회·관리 (재해이력자료실, 백서, 주요 보고서 등)	2013	내부 행정용
	재난약자보호	- 서울시 재난취약가구, 지킴이/재난약자 등 관리 - 재난도우미 문자발송, 폭염/한파 일일상황보고 등	2013	내부 행정용
	현장대응모바일 시스템 (안드로이드, IOS)	- 현장영상정보 실시간 전송 (서울안전통합상황실과 현장 영상 전송), 메모장, 공지사항 관리 등 ※ 충무기밀실 및 재난지휘버스와 연계	2013	내부 행정용
	수방/제설	-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의 운영시스템에서 풍수해 및 제설 관련 콘텐츠 연계	2013	내부 행정용
	통합관리자	- 통합재난관리(재난안전포털)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2013	내부 행정용
재난안 전포털 시스템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 재난안전분야 대표 홈페이지 (http://safecityseoul.go.kr) - 주요 재난안전 정책,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 - 실시간 재난 및 사고속보 알림 - 행동요령을 카드형태로 재구성 제공 (재난유형별 재난단계별 시민행동요령) - 재난대비 시설정보 등 관련 콘텐츠 제공 ※ PC와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동일정보 제공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 반응형웹으로 개발	2017 (재구축)	시민 서비스
	서울안전앱 (안드로이드, IOS)	- 실시간 재난/사고속보에 따른 재난유형별 상황별 시민행동 요령 및 재난대비 시설정보 통합 제공	2017	시민 서비스
	재난지도	- 서울시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사고 통계정보 구축 (공사장 정보, 지하철사고 등)	2017	내부 행정용

- 다음으로, ‘도로건설사업 사후관리 및 조경식재 유지관리’는 도로건설사업 조경식재공사의 활착기 집중적인 유지관리로 수목의 고사를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하려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7천만원 중 61.3%인 4천 3백만원을 불용함.
- 불용사유는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건설 조경식재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 4천 5백만원 중 불용액 1천 8백만원은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등에 의한 것이며,
- 나머지 2천 5백만원은 ‘구리~암사대교 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1)’를 실시하기 위해 편성했던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인데, 그 사유는 해당 사후환경영향조사가 ‘18.12월에 이미 완료되어 불필요해짐에 따른 것임.

[“암사대교 사후환경영향 조사” 관련 추진경위]

- ‘98.5.~‘99.12. : 「구리~암사대교 건설」 기본계획 용역 시행
- ‘01.7.~‘05. 9. : 「구리~암사대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06.4. : 「구리~암사대교 건설」 착공
- ‘16.8. : 「구리~암사대교 건설」 준공
- ‘07.1.~‘18.12. : 「구리~암사대교 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1~12차)

- 따라서, 예산 편성 당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18.12월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낳았는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의무 대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함 (폭 25m이상 연장 4km 이상 신설 도로사업에 대해 착공시부터 준공후 3년까지).
· 구리~암사대교 건설(‘16.8. 준공)

-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지하도상가의 건설 후 민간 사업시행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해지시지급금 총 490억원(‘19.8월말 기준) 중 당해 연도에 편성한 예산액 290억원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 이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 대주단에서 제시한 해지시지급금 지급부담을 서울시가 전부 떠안기 전에 현재의 운영불가 상태에 이르게 된 서울시, 영등포구, 사업시행자 간 책임소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규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의회가 요청함에 따라
 - 시는 이에 대한 경위 재조사, 법률 검토 등을 추진하던 중 ‘19.10월 대주단(하나은행 외 2)에서 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불용한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지급규모, 지급대상, 상가명도, 임차보증금 문제 등의 이행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는 소송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라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철도건널목(오류1, 향리3) 위탁관리’사업은 2개 철도건널목(오류1, 향리3)의 월 2회 정기점검을 철도건널목 전문관리기관

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8천 4백만원 중 72%인 6천만원을 불용함.

- 불용액 6천만원 중 해당 철도건널목을 '19년 초에 개통하여 유지관리를 위탁할 계획으로 편성했던 2천 3백만원은, 오류선(군 전용선) 운행재개를 위한 합동점검('19.3.18.)에서 발견된 건널목 차단기 등의 노후 및 고장에 대한 긴급수리가 추가 실시('19.11.)됨에 따라 철도건널목을 계획된 시기에 개통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한 것이며,
- 예산현액 8천 4백만원 중 추경으로 편성했던 6천 1백만원은 오류1 건널목 차단기, 신호음성장치, 차단봉 등 긴급수리를 위해 2천 4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함.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17,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철도시설 개선협의 지연”의 동일한 사유로 위탁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수리 명목으로 당해 연도에 추경(6천 1백만원 증액)을 편성하고 이를 전액 소진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시 불용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 본 사업에 대한 연례적 불용사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확실한 사업계획 하에 적정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뿐만 아니라 긴급수리를 위해 추경편성한 예산(6천 1백만원) 중 61.8%가 불용되었다는 것은 앞서 위탁사업비의 반복되는 불용과 함께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방증하는 것이라 사료됨.

-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은 서울시 자연과학분야(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사업의 출연금은 108억 94백만원으로 전액 지출완료되었는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²⁾에 따라 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에 기술연구원이 출연금에 대해 서울시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예산현액(148억58백만원)³⁾ 대비 지출 67.6%(100억 43백만원), 이월 8.7%(12억 99백만원), 집행잔액 23.7%(35억 16백만원)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서울기술연구원 2019 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
연구사업비	3,300	1,922	731	383	264
경영사업비	2,551	2,322	-	135	94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2019년 예산현액

(단위:백만원)

과목	계	출연금	이자수입	수탁사업	이월금	보조금	'18명시이월
예산	14,858,343	10,894,078	15,000	206,865	1,808,150	92,900	1,841,350

- 이월금: 2018년도 인건비 이월금
- 보조금: 시 산하기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총무회계팀-1362 '19.7.12.)
- '18명시이월: 2018년 연구비 이월금

인건비	5,585	4,006	-	-	1,579
수탁사업비	207	102	50	-	55
보조금	93	93	-	-	-
'18명시아월	1,841	1,598	-	-	243
예비비	1,281	-	-	-	1,281
합계	14,858	10,043	781	518	3,516

※ '18 명시아월 : '18년 게시 이후 연구과제종료일이 '19년 중 도래하여 명시아월 했던 연구사업비

※ 집행잔액 : 3,516백만원 + 잡수입/이자수입 초과수입분 17백만원 = 3,533백만원

[집행잔액 처리내역]

① '20년 출연금 요구 시 감액반영 3,020백만원

② '19년 결산 결과 추가발생한 결산잉여금('20.2월에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여 결산한 결과 발생한 금액) 503백만원

=> '20년 예산에 예비비(내부유보금) 반영

③ 수탁과제 정산반납 10백만원

- 먼저, 연구사업비 33억원 중 22.1%인 7억 31백만원이 명시아월되었으며, 이는 2020년에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17개의 연구사업과 2개 사업의 과제 종료 후 정산지급비용 발생에 기인한 것임.
- 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55억 85백만원 중 28.3%인 15억 79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편성 당시 정원 65명(2019년 정원 75명)에 대한 인건비(급여, 각종수당, 사회 보험료 등 포함)를 편성하였으나 3월 28명 채용, 8월 9명 채용, 12월 4명 채용 등 단계적인 인원 확충이 이루어져 인건비 불용이 발생한 것임.
- 아직도 추가적인 연구원 채용이 계획되어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인력채용시기를 감안하여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하여 편성토록 노력해야할 것임.

- 참고로, 당해연도 총 집행잔액(결산잉여금) 35억 16백만원 중 30억 2천만원⁴⁾은 「2019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20년 예산편성 시 감액 반영하였으며 2019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결산잉여금 5억 3백만원은 2020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한편, 당해연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 내역은 다음 [표]에 서와 같이 연구사업비가 38억원, 경영사업비가 15억 1천만원이었으나, 의회 승인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서 연구사업비가 5억원 감액되어 비목간에 조정이 발생함.

[표] 서울기술연구원의 2019 회계연도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의회 승인 예산	이사회 의결 예산	증감
출연금	10,894	10,894	
연구사업비	3,800	3,300	△500
경영사업비 ⁵⁾	1,510	2,010	500
인건비	5,585	5,585	-



[서울기술연구원 예산편성 절차]

- 4) 2020년 예산 감액반영분 30억 20백만원: 2018년 결산잉여금 사용잔액(12억 81백만원) +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17억 38백만원) + 자체이자수입 (30백만원)
- 5) 2019년 경영사업비 예산현액: 2019년 경영사업비 예산현액은 출연금 중 20억 1천만원과 이자수입과 2018년도 이월금 중 5억 41백만원을 합해 최종 25억 51백만원임.

- 이에 대해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기술연구원 제규정집 회계 규정’ 제20조부터 제22조⁶⁾까지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시장에게 출연금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확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의회 심사 이후 이처럼 예산 비목간 변경이 일어날 경우 의회의 예산심사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 2018년 9월 1차 연구직 채용 이후, 연구진들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차년도 연구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등 설립 첫 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출연금 편성 전 차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승인 후 이사회에서 예산 비목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의 국

6) 서울기술연구원 제규정집-회계규정 제20조(예산편성지침) 예산책임자는 연구원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전년도 8월말일까지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각 부서 예산을 편성토록 한다.

제21조(소관부서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① 각 부서장은 전항의 지침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예산안과 운영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 9월 30일까지 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조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10월말까지 정관 제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요구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안의 확립) 원장이 승인한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확립된다.

외업무여비에서 6백만원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특정업무경비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에서 4천 1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함.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안전총괄	재난관리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202-03 국외업무여비	90	6	-	'19.11.27	안전총괄실 12월 대민활동비 부족분 충당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204-03 특정업무경비	139	-	6		
2	도로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83	41	-	'19.10.10	도로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309	-	41		

- 먼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특정업무경비으로의 6백만원 전용은 공정점검 TF, 안전어사대(시간선택제임기제)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총괄실 소속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 지급대상: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 지급액: 월 50,000원

- ‘19년 예산편성 당시 5급 이하 현원이 232명이었던 것에서 ‘19.11월 기준 247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표] 전용 필요금액(6,000천원) 산정

(단위: 천원)

예산 현액	기원인행위액	잔액	추가 필요액
139,200	132,913	6,286	5,839

- 다음으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의 4천 1백만원 전용은 중도 퇴직자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추가 발생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 당초 '19년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6개 도로사업소 소요예산을 신청 받아 편성했으나 성동,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각 1명씩 중도 퇴직하고, 미사용 휴가 증가로 수당 소요액이 추가 발생함에 따른 것임.

[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및 부족 예산

(단위:천원)

구분	기 편성	배정	집행	배정잔액(a)	집행잔액(b)	잔액합계(c)=a+b	4분기 집행계획(d)	부족액(c-d)	기편성 대비 부족사유
계	309,740	259,380	248,195	50,360	11,185	61,545	102,736	-41,191	과부족 반영
동부	30,000	22,593	22,165	7,407	428	7,835	11,897	-4,062	- 연월차수당1,062천원 - 임금인상분3,000천원
서부	27,600	21,850	21,840	5,750	10	5,760	11,710	-5,950	- 연월차수당5,950천원
남부	61,840	36,520	34,928	25,320	1,592	26,912	11,200	15,712	
북부	120,700	99,320	90,571	21,380	8,749	30,129	32,529	-2,400	- 임금인상분2,400천원
성동	-	10,068	10,062	-10068	6	-10,062	-	-10,062	- 중도퇴직자 1명 퇴직금10,062천원
강서	69,600	69,029	68,629	571	400	971	35,400	-34,429	- 3명 급여17,929천원 - 중도 퇴직자 1명 퇴직금12,000천원 - 3명 연월차수당 부족 4,500천원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예비비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등 총 8건에 786억 66백만원을 지출함.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698	'19.1.31.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 취소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지급
도로계획과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17,124	'19.2.15.	응암1 주택재건축정비, 내곡 보금자리 사업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81	'19.2.22.	마곡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 '계획변경 미통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611	'19.3.4.	남부순환로(개봉역앞) 구조개선 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5,252	'19.3.26.	마곡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3,510	'19.7.19.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무상귀속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도로시설과	서초고가 보수공사 사고배상	50	'19.7.31.	서초고가 공사용 가시설과 충돌 피해 구상금 청구 소송 일부 패소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49,339	'19.12.24.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1,954백만원),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47,385백만원) 무상귀속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합계	8건	78,666		

- 먼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 26억 98백만원은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이 ‘13년도분 대부료 과다산정을 이유로 대부료 납부를 거부하자 서울시가 ’13.8.8.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20억 38백만원을 시로 귀속시키면서,

- 법인측이 계약해지 취소소송을 제기('13.8.23)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패소('18.11.29)함에 따라 '13년 시로 귀속한 계약보증금(2,038백만원)과 이자액(660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 다음으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배상금 명목의 8천 2백만원은, '04.8.3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공익사업)를 위해 시가 민간인의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08.12.30일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한 바 있는데,

-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후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7)에 따라 원 소유자 또는

7)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

그 상속인들에게 환매권 통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가 패소함에 따른 것임.

- 환매권 미통지가 단순 행정적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의도된 행정편의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 불가하나 이처럼 시민의 법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소송에 이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 지급까지 수반하는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다음 [표]와 같이 총 4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당시에 유상 매각된 시유지를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에 시가 패소함에 따른 것임.

-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8)에 따라 사업구역 내 시유

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매각하고 있음.

- 다음 [표]의 6건의 소송에서 사건토지가 공공용재산이었던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당시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를 증빙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유사한 사유로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대부분 패소하여 막대한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시행자와 함께 무상양도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소송 등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19년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라 지출된 총 예비비 중 이자비용은 203억 51백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음.

[표]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출일	개발사업명	사업시행자	사건토지(면적)	원금	이자
1	'19. 2.15.	응암1 주택재건축	조합	은평구 응암동 620-20 외 28필지(5,421.6㎡)	11,353	587
2	'19. 2.15.	내곡 보금자리주택	SH	서초구 내곡동 122-2 외 21 필지(8,222㎡)	4,256	928
3	'19. 3.26.	마곡 도시개발	SH	강서구 마곡동 222-41 외 14필지(2,661㎡)	3,677	1,575
4	'19. 7.19.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	SH	중랑구 신내동 4-5외 21필지 4,043㎡)	2,477	1,033
5	'19. 12.24.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SH	은평구 진관내동 283-3 외 178필지(26,561㎡)	32,490	15,170
6	'19. 12.24.	서초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SH	서초구 우면동 148-4 외 4필지(5,081㎡)	1,242	1,058
합계					55,495	20,351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시민 안전교육 강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총 18건에 47억 99백만원임([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과	시민 안전교육 강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80	480	100.0%
안전총괄과	도사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207-02 전산개발비	422	105	24.9%
안전총괄과	도사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401-01 시설비	255	107	41.9%
안전총괄과	도사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154	57	36.7%
상황대응과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600	164	27.3%
상황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수습 복구 가상훈련장 설치	401-01 시설비	400	216	53.9%
도로계획과	도로건설사업 사후관리 및 조경식재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70	27	38.7%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3,313	850	25.7%
도로관리과	노후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29,857	1,715	5.7%
도로관리과	2019년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	207-02 전산개발비	297	62	20.7%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 보강	401-01 시설비	3,289	39	1.2%
도로관리과	도로함몰 예방 사업	401-01 시설비	4,848	90	1.9%
도로관리과	스마트 가로등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401-01 시설비	209	20	9.6%
도로관리과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401-01 시설비	100	39	38.8%
도로관리과	안전한 재설사설(자동액상설포장)치 열선 설치(시민참여)	401-01 시설비	150	131	87.5%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1-01 시설비	2,005	62	3.1%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442	211	47.7%
교량안전과	도림교가압배터 설치(시민참여)	401-01 시설비	424	424	100.0%
계(18건)			47,315	4,799	10.1%

- 먼저, ‘**시민 안전교육 강화**’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4억 8천만원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보조사업의 주체인 대한적십자사 사업비 자부담분 14억 4천만원에 대한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사업의 용역 계약이 ‘19.12.4일 체결된 것에 기인함.
 - 이는 대한적십자사에서 現진급구호종합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시민 대상의 실질적인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 위주의 차별화된 참여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예산 19억 2천만원 중 4억 8천만원을 서울시가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하여 ‘19년 예산에 편성했던 것임.
 - 이처럼 외부기관과의 매칭에 의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매칭 부담분이 약속된 시기에 정확히 확보될 수 있다는 확실한 담보가 확인되었을 때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탁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전산개발비에서 1억 5백만원(24.9%), 시설비에서 1억 7백만원

(41.9%),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천 7백만원(36.7%)이 각각 사고이월 됨.

-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월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 예정이어서 법정 상위계획인 기반시설관리 기본 계획 등의 반영을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했다는 입장임.
- 동 사업은 당초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이하 '노후기반시설 조례')에 따른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 연계사업인 '통합기준 매뉴얼 용역'을 '18.8월에 준공한 후 '18.9월에 본 사업을 착수('19.9월 준공예정)하였으나 '18년 편성예산의 62%인 6억 84백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음.
- 또한, 당해 연도에는 대상기반시설에 열수송관을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4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이렇게 계상된 당해 연도 예산현액 8억 32백만원 중 추경예산인 1억 48백만원 역시 차년도로 명시이월하는 한편, 명시이월된 전체 예산 중 '18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6억 84백만원 중 2억 68백만원은 당해 연도에 또 다시 사고이월함.

- 노후기반시설 조례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이해되나 연례적인 이월과 무분별한 추경편성 등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사용과 공정관리에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9	25,120	4,986	-	15 (-15)	-	-	30,106	4,435	23,621	23,077	544	2,050 (6.8%)
2018	5,900	3,462	-	-	-	-	9,362	2,361	4,986	4,986	-	2,014 (21.5%)
2017	15,058	5,657	-	-	-	-	20,715	16,920	3,462	2,000	1,462	333 (1.6%)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251억 2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8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1억 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4억 35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2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0억 5천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0억 5천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계정)’ 1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	0	2,000	100%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서북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왕복 4차로 연장 5.76km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을 불용함.
 - 이는 용지 보상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이 종로구 자하문길 접속에 따른 교통정체를 우려한 종로구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 본 사업의 경우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2017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보상비 예산 20억원 전액이 금회와 동일한 사유로 불용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이월에서 불용처리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낳게 되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참고로, 2020회계연도에는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변경사용은 '제2자유로 중점부(난지도길) 입체화'사업에서 당초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해 편성한 시설부대비의 부족분(1천 5백만원) 충당을 위해 시설비를 1천 5백만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를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한 것임.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계획	간선도로망 확충	제2자유로 중점부(난지도길)입체화	401-01 시설비	19,000	15	-	'19.8.13	시설부대비 부족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변경 사용
		간선도로망 확충	제2자유로 중점부(난지도길)입체화	401-03 시설부대비	5	-	15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의 시설비 5억 44백만원 1건으로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401-01 시설비	1,061	544	51.3%
계			1,061	544	51.3%

- 본 사업은 '06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07년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가 지역주민의 도로 전면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 요구 민원으로 노선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이행을 위해 '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 '16년 말 노선계획을 재검토하여 '17년부터 1구간 설계를 재개되었으나 서울시 설계안에 대한 주민 간 의견대립으로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연기('19.11월→'20.8월)됨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요구사항들 간의 절충점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수납률(%) (B/A)
2019	3,957	3,957	6,271	6,271	-	-	100%
2018	3,000	3,000	-	-	-	-	0%
2017	20,715	20,715	20,715	20,715	-	-	100%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39억 5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62억 71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의 국비보조금 7억 45백만원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의 국비보조금 32억 12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조정과 전년도 미교부된 국비가 교부됨에 따른 것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9	55,487	52,974	-	-	-	-	108,461	89,669	14,376	1,490	12,886	3,658 (3.4%)
2018	117,948	12,087	-	33	-	-	130,035	68,089	52,974	51,469	1,505	8,972 (6.9%)
2017	35,762	19,719	-	-	-	-	55,481	42,485	12,087	9,073	3,014	909 (1.6%)

가) 개 요

- 예산액 554억 8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9억 7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08억 61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96억 6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3억 7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36억 5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에서 당해 연도 예산현액 대비 47.2%인 36억 22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7,474	1,421	3,622	48.5%

- 2006년 6월 착공한 암사대교는 2014년 11월 21일 용마터널과 동시 개통하면서 2016년 8월 암사대교 본선교량 공사를 최종 준공했으나, 당해 연도 편성예산은 이와 별개로 구리암사대교 실시계획인가 조건사업과 잔여공사를 위한 것으로,
- 실시계획인가 조건사업인 구리~암사대교 연계도로인 구리시계 내 도로개설공사 개설을 위해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구리시의 정보 제공이 원활치 않아 보상처리 지연으로 인해 설계

비 및 공사비 6억원과,

- 구리시 아천IC의 대체녹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이 역시 대체 녹지 조성지 변경 검토를 위한 구리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보상비 및 건설비 25억원,
- 그리고 잔여공사인 고덕교 확장공사에서 다량의 지하 지장물이 발견되어 보행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 및 향후 유지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공 가능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검토 후 설계변경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어 '20년 공사가능 금액을 제외한 5억원을 불용한 것임.
- 참고로, 당해 연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명시이월 당시의 이월사유가 당해 연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결국 불용으로 이어진 것임.
- 이처럼 본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구리시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부터 무리하게 명시이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이 확실시 되는 예산만 최소한으로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여 차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과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그 총액은 128억 86백만원임.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01-01 시설비	95,981	10,190	10.6%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01-02 감리비	2,147	65	3.0%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7,474	2,431	32.5%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암사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200	200	100.0%
계			105,802	12,886	12.1%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	186,286	186,286	168,200	168,200	-	-	100%
2018	4,746	4,746	4,746	4,746	-	-	100%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1,862억 86백만원이고, 예산액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19	719,196	110,225	-	2,024 (-2,024)	-	-	829,422	638,398	135,721	74,731	60,990	55,302 (6.7%)
2018	692,027	100,390	50	1,568 (-1,568)	-	23,817	792,468	630,666	110,225	88,263	21,962	51,577 (6.5%)
2017	626,896	73,918	-	1,337 (-1,337)	310 (-310)	-	700,814	566,323	100,390	80	100,310	34,101 (4.8%)

가) 개요

- 예산액 7,191억 9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02억 2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294억 22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383억 9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7억 2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553억 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553억 2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은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주변 도로(보도) 확장’ 등 38건([표] 참조)이며,
- 전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6.5%), 불용액(515억 77백만원),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건수(37건) 대비 경미하게 증가한 상태로 신중한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주변 도로(보도) 확장	610	393	217	35.6%
2	도로계획과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75	25	50	66.2%
3	도로계획과	퇴계로 지하차도 평면화를 통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100	65	35	34.6%
4	도로계획과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타당성 조사	50	16	34	68.6%
5	도로계획과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5,373	4,848	525	9.8%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6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612	30,414	10,198	25.1%
7	도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매수청구 보상	6,216	5,642	574	9.2%
8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2,000	1,270	419	21.0%
9	도로계획과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15,465	12,742	2,463	15.9%
10	도로계획과	밤고개로 확장	12,099	6,550	1,475	12.2%
11	도로계획과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7,517	6,139	1,378	18.3%
12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75,230	69,262	5,618	7.5%
13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3,558	9,364	812	6.0%
14	도로시설과	서울시 도로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613	-	204	33.3%
15	도로시설과	공항입구지하차도 보수	150	88	62	41.2%
16	도로시설과	홍제천고가교 교면포장 정비	2,530	2,130	400	15.8%
17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0,370	9,242	1,127	10.9%
18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12,160	11,358	802	6.6%
19	도로시설과	옥수·금호터널 보행환경 개선	2,000	1,653	347	17.3%
20	도로시설과	청계천복개(우안) 보수	1,521	272	319	21.0%
21	도로시설과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7,340	6,212	1,128	15.4%
2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10,880	10,145	735	6.8%
23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5,883	717	770	13.1%
24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487	319	169	34.6%
25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방호	5	3	2	40.8%
26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8,384	5,488	2,896	34.5%
27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19,096	12,290	6,806	35.6%
28	교량안전과	특수교량 피뢰설비 정비공사	118	57	61	51.6%
29	교량안전과	천호대교 보수공사	500	280	220	43.9%
30	교량안전과	다리보수 및 조명설치 사업	500	250	250	50.0%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31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45	28	17	38.1%
32	교량안전과	동호대교 보수공사	2,000	1,493	507	25.3%
33	교량안전과	성수대교 보수공사	3,970	3,427	544	13.7%
34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3,562	10,930	2,632	19.4%
35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10,547	3,231	2,060	19.5%
36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3,067	2,616	452	14.7%
37	교량안전과	신정교 보수공사	1,700	1,324	376	22.1%
38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6,549	5,310	564	8.6%

○ ‘신림 ~ 봉천터널 건설’사업은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406억 12백만원 중 25.1%인 101억 98백만원을 불용함.

- 그 사유는 작업 현장이 주택가와 인접하여 터널 굴착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굴착량을 축소(1m/회→0.5m/회)하고 공법을 변경(소규모 진동제어발파 공법→미진동 굴착공법)하면서 공정이 지연되어 가시설 및 터널공사를 위한 시설비 약 65억원을 불용하였으며,

- 또한, 유관기관(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과의 상수도 관 이설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상수도 이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시설비 36억원이 불용된 것임.

- 본 사업의 ‘19년 예산은 전액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이들 불용

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예산편성 당시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급하다 한 사업이 이처럼 지연되면서 회계상 불용으로 잡히는 것은 전전재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할 것인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도심 굴착공사의 경우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이러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는 터널, 지하차도, 교량, 고가차도의 조명시설 및 관련 기전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73억 4천만원 중 15.4%인 11억 28백만원을 불용함.
 - 서울시는 ‘19년 예산 편성 시 신규인수 예정인 5개소의 지하차도(장지, 위례1, 탄천우안, 담터, 천호)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전년 예산의 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 해당 신규인수 예정이었던 5개소의 지하차도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연장이 발생하였고, 인수인계 전 합동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결과 균열, 누수 등의 하자발생으로 인수가 지연되어 따라 3억 5천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시설별 인수현황]

- 1) 위례중앙지하차도(가칭, 장지지하차도)
(인수년월) 20년 2월, (공사시행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2) 위례지하차도(가칭 위례1지하차도)
(인수예정년월) 20년 7월, (공사시행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3) 문정지하차도(가칭, 탄천우안로)
(인수예정년월) 20년 7월, (공사시행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4) 답터지하차도
(인수년월) 20년 1월, (공사시행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5) 아차산지하차도(가칭, 천호지하차도)
(인수년월) 20년 2월, (공사시행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나머지는 노후 조명시설의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등 예산 절감으로 7억 78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노후 조명시설 LED 교체로 전기요금 등 예산 절감내역(778백만원)]

- '18년 LED로 교체 (5,265등) : 357백만원 (1년분)
- '19년 LED로 교체 (15,191등) : 421백만원 (5개월분)
- ※ 1등당 연간 절감액 67,800원

- 동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소요예산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추계 없이 개략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3%를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용규모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임.
-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특수구조(케이블, 아치, 게르버 보)의 한강교량에 상시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교량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

산현액 4억 87백만원 중 34.6%인 1억 69백만원을 불용함.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경위]

- '04.10.15~'07.02.20 : 한강교량 On-Line 안전감시시스템
구축(6개교:행주,올림픽,원효,서강,성산,가양)
- '08.10.09~'09.02.28 : 안전감시시스템 보강용역 시행(4개교:행주,올림픽,원효,성산)
- '10.12.29~'11.10.31 : 안전감시시스템 확대 구축용역 시행(3개교:한강,성수,청담)
- '12.06.27~'13.02.20 :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 중(2개교:행주,올림픽)
- '13.05.27~'14.02.28 : 양화대교 계측시스템 온라인 시스템과 연결
- '15.03.01~'16.06.30 : 구리암사대교 계측시스템 온라인 시스템과 연결
- '18.08.30 : 2018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완료

- 이는 당초 교량의 정확한 거동 파악을 위한 GNSS(정밀GPS 측량)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시범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 자문결과('19.8월)⁹⁾ 가양대교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 가양대교 시범도입을 위한 사전 적용성 조사 추진 중 미국 소재 GNSS 납품업체의 공장이설 추진으로 GNSS 납품가능시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1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그리고 나머지 6천 9백만원은 낙찰차액에 해당함.
-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로운 시스템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9) 가양대교 변경 선정 사유

- GPS 기준국과 근접하여 정확한 값 도출이 가능
- 우리나라의 강박스 거더교 중 최대경간장
- 기존 처짐 계측과 비교 검토 가능

-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사업은 한강교량의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조치 및 공용 중 긴급 보수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83억 84백만원 중 34.5%인 28억 96백만원을 불용함.
 - 불용 세부내역은 시설비의 계약심사 절감액 3억 4천만원, 낙찰차액 8억 77백만원, 그리고 물량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 16억 79백만원에 해당함.
 - 본 사업은 연간단가 공사로 물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 담당자의 작업지시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체계로,
 - 당해 연도 대상 교량들 중에 보수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공정을 요하는 일부 교량들 즉, 천호대교, 행주대교, 동작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접속교 등에 대해 차년도 단일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물량이 감소한 것임.

[2020년 단일사업 반영 현황]

- 천호대교 : 신축이음교체(30개소), 단면보수 600m², 균열보수 30m
- 행주대교 : 신축이음교체(3개소 600백만원)
- 동작대교 : 교면포장보수(48a)
- 영동대교 : 교면포장보수(76.5a)
- 잠실대교 접속교 : 단면보수 750m²

- 이처럼 관성적인 물량추정에 의한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단일사업 추진대상에 대해서는 구조물 손상의 규모, 심

작성, 시급성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효율적 예산사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 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은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등 총 12건에 20억 24백만원으로 감리비 또는 시설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것임.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401-01 시설비	4,898	238	-	'19.11.26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실투입 감리비 정산 결과에 따른 부족 감리비 확보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도시개발특별)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401-02 감리비	475	-	238		
2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401-02 감리비	676	53	-	'19.12.06	잔여 감리비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한 통계목 금액 변경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401-01 시설비	7,524	-	53		
3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월드컵 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63,000	513	-	'19.05.13	감리비 증액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시설비 감액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발특별)	월드컵 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1,300	-	513		
4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발특별)	월드컵 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62,487	226	-	'19.12.16	월드컵대교 남단 보완설계의 설계 변경에 따른 감리 비 총당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발특별)	월드컵 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1,813	-	226		
5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발특별)	디지털3단지~두 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2,336	8	-	'19.11.14	도기본 감리투입 계획 변경에 따라 감리비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발특별)	디지털3단지~두 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300	-	8		
6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발특별)	금호로 확장	401-01 시설비	11,850	227	-	'19.11.2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발특별)	금호로 확장	401-02 감리비	250	-	227		
7	도로 관리	사업소 환경 개선 (도시개발)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401-01 시설비	5,924	22	-	'19.11.21	남부도로사업소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감리용역 기 간 연장
		사업소 환경 개선 (도시개발)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401-02 감리비	515	-	22		
8	도로 시설	기 전 시설물 관리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5,883	251	-	'19.08.19	공사 안전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 및 전기공사 분야 감리용역 시 행
		기 전 시설물 관리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401-02 감리비	-	-	251		
9	교량 안전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방호	20 공공운영비	3	1	-	'19.09.26	청원경찰 복리후 생비 증액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방호	201-01 사무관리비	2	-	1		
10	교량 안전	한강교량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11,981	353	-	'19.10.18	공사비 증가(10% 이상)에 따른 추 가 감리비 확보
		한강교량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629	-	353		
11	교량 안전	일반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2,800	76	-	'19.07.15	감리비 추가 확보
		일반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2 감리비	600	-	76		
12	교량	고가차도 및	영등포역고가	401-01	1,750	56	-	'19.09.04	설계변경에 따른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안전	입체 교차로 관리	보수공사	시설비				'19.12.27	증액 (동일 단위 사업내 공사완료 된 사업 낙찰차액 사용)
		고가차도 및 입체 교차로 관리	도림천고가 보수공사	401-02 감리비	1,350	-	56		
총 변경건수: 12건					208,345	2,024	2,024		

-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 총 12건이며 이 중 10건은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충당해 사용한 것으로, 감리비 부족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과업내용 증가, 감리기간 연장 등에 해당함.
 - ‘금호로 확장’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에 따라 기편성 감리비 대비 91%나 증가했는데, 이처럼 도시개발특별회계 다수의 사업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기연장 문제는 감리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 소송비용 등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므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소방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이 필요하여 시설비로부터 2억 51백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 이는 의회 예산심사 당시 감리비 항목이 없었던 것을 임의로 신설하여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사전 예산승인제도에 위배된다 할 것인바 지양되어야 할 것임.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시설비 등 총 44건에 이월금액은 609억 9천만원임 ([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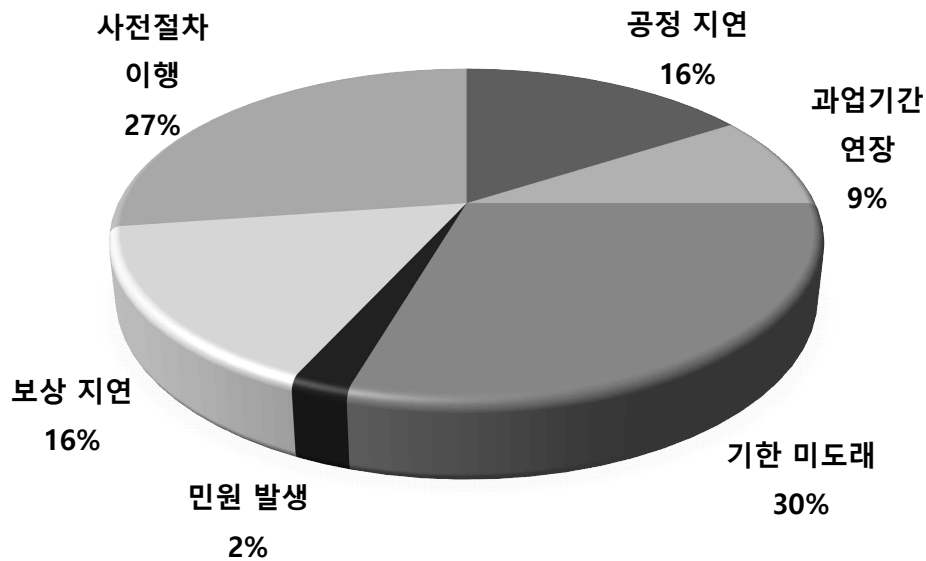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과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	401-01 시설비	3,263	818	25.1%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401-01 시설비	57,657	1,080	1.9%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401-02 감리비	600	47	7.8%
도로계획과	월드컵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70,320	10,164	14.5%
도로계획과	월드컵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2,158	78	3.6%
도로계획과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0,417	2,312	22.2%
도로계획과	안양교 확장	401-01 시설비	15,164	189	1.2%
도로계획과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401-01 시설비	2,659	2,512	94.5%
도로계획과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401-02 감리비	250	250	100.0%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5,928	1,693	10.6%
도로계획과	사당로(구)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5,967	25	0.4%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2,000	311	15.6%
도로계획과	서초~방배로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14,822	260	1.8%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8,499	5,093	59.9%
도로계획과	금호로 확장	401-01 시설비	15,863	4,524	28.5%
도로계획과	금호로 확장	401-02 감리비	526	265	50.4%
도로계획과	밤고개로 확장	401-01 시설비	11,480	3,929	34.2%
도로계획과	밤고개로 확장	401-02 감리비	619	144	23.3%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1,965	382	3.2%
도로계획과	보문로(대광초교 삼거리)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1,500	359	23.9%
도로계획과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401-01 시설비	3,340	2,300	68.9%
도로계획과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401-02 감리비	200	200	100.0%
도로계획과	안양천횡단 연결로(보도교) 신설	401-01 시설비	4,799	1,956	40.8%
도로계획과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1,100	50	4.5%
도로계획과	아리수로 생태육교 경관개선	401-01 시설비	700	84	12.0%
도로계획과	헌릉로 확장	401-01 시설비	800	293	36.6%
도로계획과	천호대교 확장	401-01 시설비	200	45	22.2%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1 시설비	73,521	185	0.3%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2 감리비	700	165	23.6%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401-01 시설비	12,877	3,205	24.9%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401-02 감리비	659	177	26.9%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종합대책 수립	401-01 시설비	500	289	57.8%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 보수	401-01 시설비	7,803	2,314	29.7%
도로시설과	서울시 도로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401-01 시설비	613	409	66.7%
도로시설과	청계천복개(우안) 보수	401-01 시설비	1,521	930	61.1%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5,632	4,146	73.6%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401-02 감리비	251	251	100.0%
교량안전과	한강대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280	124	44.4%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401-01 시설비	299	180	60.0%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10,277	5,256	51.1%
교량안전과	강일육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500	198	39.7%
교량안전과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5,200	2,996	57.6%
교량안전과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401-02 감리비	450	127	28.2%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6,549	675	10.3%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계		390,428	60,990	15.6%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고이월건을 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기한 미도래’ 30%, ‘사전절차 이행’ 27%, ‘공정 지연’ 및 ‘보상 지연’ 각각 16%, ‘과업기간 연장’ 9%, ‘민원 발생’ 2%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유]

- 먼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한 미도래’는 공정별 선행 또는 후행의 설정이 불가피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일부 인정되지만, 이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는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관성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고이월이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역시 불가피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사료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협의 등을 선행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한편, ‘보상 지연’ 또는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은 대부분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예산편성에 특별한 주의가 당부됨.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사업의 경우 신상도 지하차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확장(2→4~6차로)하려는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29억 9백만원 중 95%인 27억 62백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 이는 지장가옥 철거주민 이주지연으로 도로부지 확보(미이주 1세대, ‘19.2.~‘19.11.)가 불가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19.11월 보완설계 및 철거주민 이주가 완료되면서 12월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공사비와 감리비를 이월한 것임.
- 참고로, 본 사업의 총 보상비는 172억원으로 ‘11년 이전에 1차 보상비 110억 31백만원이 완료된 이후 ‘17년, ‘18년에 각각 보상비 40억원, 22억원을 편성하여 현재는 총 보상을 완료한 상태임.
- 이처럼 보상문제로 사업 추진지연이 장기화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유발하므로 특별한 주의 및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금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관련한 특이사항으로 '19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증액된 이후 사고이월된 사업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사업' 등 8건이 있음([표] 참조).

[표] 추경편성 이후 사고이월된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당초 예산	추경			사고 이월액
			추경 예산	증감	사유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53,000	57,000	4,000	○ 금년 말까지 금하지하차도 및 염곡동서지하차도 개통을 하기 위한 추가예산 필요	1,080
2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2,336	12,636	10,300	○ '18.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금년 6월 수용재결 결정이 예상되며, 수용재결 결정 후 토지사용개시일(통상 6주 이내)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해야하므로 보상금 103억원 추가 확보 필요	1,693
3	금호로 확장	6,100	12,100	6,000	○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 필요(40억원) ○ 금년내 공사 준공을 위한 공사비 추가 확보 필요(20억원)	4,789
4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5,238	6,461	1,223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 ※추가예산 미확보시 준공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단 및 간접비 등의 실비 발생 우려	3,382
5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5,500	6,900	1,400	○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위험시설(안전등급 D등급)로 지정되어 철거된 보도육교 재설치 요청으로 인한 설치사업비 추가확보 필요	2,314
6	한강대교 보수공사	-	280	280	○ 백년다리(한강대교) 보행교 개통('21. 6월) 전 신속한 한강대교 종합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확보 필요	124
7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	399	399	○ 마포대교 자살방지 난간 효과에 따른 타한강교량(8개소) 으로의 확대설치 비용	180
8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2,500	5,650	3,150	○ '19년 가교설치 완료통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 공사비 필요	3,123

- 해당 사업들이 추경 편성 당시 제시했던 시급성이라는 추경사유 대비 당해 연도 사고이월액의 규모를 감안하면 모순된다

할 것인바, 향후 이와 같이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는 추경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마.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이월액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사업비 등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다음연도이월액
2019	571,474	5,211	126,742		9,790	425,797		3,934	571,474	77,994	491,954			5	1,521
2018	513,163	2,040	113,901		7,401	389,806		15	513,163	82,149	425,797			6	5,211
2017	415,089	191	100,500	2,174	6,166	259,297	46,666	95	415,089	23,239	389,806			4	2,040

* 관련 용어

수입	전입금 (법정적립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이자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이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회계 및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상환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된 금액

가) 개 요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및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¹⁰⁾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 당초 재난계정, 재해계정, 구호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재난계정(재해, 재난)과 구호계정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안전총괄실 소관임.

나) 기금 총괄(결산서 p.111)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¹¹⁾은 전년도말 조성액 4,310억 8백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¹²⁾ 1,404억 66백만원과 사용액¹³⁾ 779억 99백만원의 차를 합산한 4,934억 75백만원임 ([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31,008	62,467	140,466	77,999	493,475

1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재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당해연도말 조성액 = 전년도말 조성액+(당해연도 조성액-사용액)

12)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전입금)+이자수입+기타

13) 당해연도 사용액 = 목적사업비

다) 기금 수입결산(결산서 p.119~120)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 5,054억 47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52억 11백만원을 포함한 수입계획현액이 5,106억 58백만원이었으며 5,714억 7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503,380	505,447	5,211	510,658	571,474	571,474

- 징수결정액(수납액)이 수입계획현액보다 608억 16백만원 증가한 것은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585억 21백만원)한 것과 이에 따른 시금고 이자수입 증가(5억 78백만원) 및 '18년도 사업비 반납액 발생에 따른 증가(17억 17백만원)에 따른 것임.

라) 기금지출 결산(결산서 p.122~124)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5,054억 47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52억 11백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5,106억 58백만원이었으며 5,699억 54백만원을 지출하고 15억 21백만원을 이월시킴([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503,380	505,447	5,211	510,658	569,954	1,521

-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금액 54억 8백만원 대비 28%인 15억 21백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4건과 연구용역 1건임([표] 참조).

[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부 서	심의금 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5건			5,408	1,521 (28%)	
1	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안전총괄과	50	49 (98%)	복합재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긴급히 추진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2	고덕2배수문 강관변형구간 보수공사	강동구 (치수과)	2,447	774 (32%)	보상비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준공 지연
3	2019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광진구 (도시안전과)	40	22 (55%)	물품 제작 일정 감안하여 사업기간 연장
4	A형 간염 등 감염병 신속 검사지원	보건환경 연구원	270	31 (11%)	납품기한 연기로 인한 이월
5	가양동150-11~1479일대 외 8개소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	강서구 (물관리과)	2,601	645 (25%)	우기로 인한 공사 지연

- 먼저, ‘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18년 11월 KT통신구 화재, ’19년 6월 문래동 수질사고, 8월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 이후 서울시 복합재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하게 9월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쳐 '19년 10월 3개월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

- '고덕2배수문 강관변형구간 보수공사'는 보상비 지급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으로 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고, 공사 중 지반침하 발생 등으로 추가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이월하게 되었음.
- '2019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버스 승차대 대상지 확정, 이용객 편의제고 및 구민 불편해소 등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 맞춤형 제작에 따른 특정 소유기간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음.
- 'A형 간염 등 감염병 신속검사 지원사업'은 대형 고압멸균기 구매를 위한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음.
- '가양동 150-11~1479 일대 외 8개소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은 우기철 하수암거 내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작업 중지 및 준설작업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등을 위한 목적 사업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해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만큼 후반이나 연말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이월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가급적 필요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바 .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이월액	자차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이월액
2019	54,977	-	-	541	14,491	-	39,945	54,977	36,905	18,072	-	-
2018	45,508	-	-	386	13,451	-	31,671	45,508	31,017	14,491	-	-
2017	38,614	-	-	447	16,471	-	21,696	38,614	25,164	13,450	-	-

가) 개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이자수입 5억 41백만원, 예치금회수 144억 91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399억 45백만원을 합한 549억 77백만원이며, 이 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67.1%인 369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0억 72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기금 총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4억 91백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04억 86백만원과 사용액 369억 5백만원의 차(35억 81백만원)를 합한 180억 7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35억 81백만원을 흑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도로굴착복구기금	14,491	3,581	40,486	36,905	18,072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은 안정추세에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증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 현실화 등에 의해 수입액이 증가하여 기금의 흑자운영에 따른 것이며,

[표]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도 (결산)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수입액	22,675	25,709	23,235	22,143	32,058	40,486	
원인자부담금	22,143	25,240	22,828	21,696	31,672	39,945	
이자수입 등	532	469	407	447	386	541	
지출액	23,313	24,268	24,029	25,164	31,018	36,905	
굴착복구공	소계	22,953	23,818	23,777	24,962	30,873	36,673
	직접복구비	18,238	17,717	17,450	18,260	25,130	32,333
	사후정비비	4,167	5,553	5,568	5,218	4,382	2,834

사	감리비및부대비	548	548	759	1,484	1,357	1,506
	기타(전산운용 등)	360	450	252	202	145	232
	증 감	감 638	증 1,441	감 794	감 3,021	증 1,040	증3,581
	연도말 잔액(예치금)	15,824	17,265	16,471	13,451	14,491	18,072

다) 기금지출 결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362억 34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89억 10백만원이 증액된 451억 44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액은 81.7%에 해당하는 369억 5백만원을 지출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36,234	45,144	-	45,144	36,905	-

- 지출계획액이 수정된 주된 요인은 굴착원인자(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하는 물량이 증가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계획을 당초 248억 36백만원에서 447억 84백만원으로 증액하였고,
- 도로굴착복구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굴착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굴착의 부득이한 측면은 인정되나 잦은 도로굴착이 사고의 원인과 도로포장체의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2019년)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지출액
비용자성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36,905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6,673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231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정권고사항	소관실국
3	부실하게 운영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개선 필요	실기서노도경북도문기시안도도푸인서교감 회울동시제지시화후민전시시른권역통사 국조주생재정교환건총재계도담사위 공실(총의정생책채통본경진총재계도담사위 통(총관)원회관실실실실부부국실실실국국관관총회
8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율 저조 관련 권고	실기교안기주경시문평여스시관노복행 회통전후택제민화생가도통체생정정 국조정환건정진교족시통체생정정 공실(총책관본본책강본육책당당정책 통(총관)실실부부실실국부국실실관관국관실실국
35	민자투자사업 부실화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불용 방지를 위한 리스크관리매뉴얼 수립 권고	기회조정실(총관) 안전총관실
55	도시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및 방재 종합대책 수립 권고	안전총관실

3. 부실하게 운영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개선 필요

[성인지 예산 / [실국공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노동민생정책관, 도시재생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인권담당관,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감사위원회]

가.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예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예산 집행의 혜택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음.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2013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표 실현을 위해 성인지 예산서를 수립, 집행하고,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373개이며, 성인지 예산 총액 2,995,962백만원 중 2,901,809백만원이 지출되어 96.86%의 집행률을 보임. 각 실·본부·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2019회계연도의 성인지 예산 사업은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사업건수가 102건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700억원 넘게 증액되었음.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의 성인지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71	2,270,362	2,166,614	95.4
일반회계	238	2,121,584	2,027,750	95.6
특별회계	24	139,729	132,566	94.9
기금	9	9,049	6,298	69.6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373	2,995,962	2,901,809	96.86
일반회계	321	2,695,022	2,641,528	98.02
특별회계	37	283,599	247,481	87.26
기금	15	17,341	12,800	73.82

□ 2019회계연도 부실한 성인지 결산 내역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다수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가 0(%)이거나 불특정다수’,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0(%)’,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불특정’으로 설정되어 성평등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 평가하기 어렵게 작성되었음.

사업수혜자가 0(%)이거나 불특정다수인 사업

연번	실국	사업명
1	노동민생정책관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2	도시교통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3	도시재생실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0%인 사업

연번	실국	사업명
1	노동민생정책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2	경제정책실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3	경제정책실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
4	복지정책실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 불특정 사업

연번	실국	사업명
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	도시교통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설치
4	문화본부	월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5	문화본부	문학의 집 서울 지원
6	기후환경본부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7	기후환경본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8	재무국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9	시민건강국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
10	시민건강국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11	안전총괄실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12	안전총괄실	시민 안전교육 강화

연번	실 국	사 업 명
13	안전총괄실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14	도시재생실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15	도시재생실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16	도시재생실	주민역량강화(도시재생기금)
17	도시재생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8	도시재생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	도시계획국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
21	인권담당관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22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23	서울식물원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4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홍보
25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교통방송 홍보
26	감사위원회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2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협치 활성화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선정된 취지가 사업 담당자들과 충분하게 소통되고 있지 않음.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0(%)인 사업’인 노동민생정책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경제정책실의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 사업과 복지정책실의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시설의 신축 또는 개선을 시행하는 사업임. 이들 사업의 경우 건축물 신축 및 개선 시 설계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지는 취지로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이 같은 선정 취지가 담당자들과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음.

또한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불특정’ 사업에 해당하는 서울 역사박물관의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의 경우 “박물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의 특성 상 성평등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고 함.

나. 시정권고

2019회계연도의 성인지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건수가 102건 증가하였고, 700억원이 넘게 예산액이 증액되는 등 성인지 예산 사업 정착에 진전이 있었음. 성인지 예산 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각 실·본부·국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그럼에도 2018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미진하게 운영된 성인지 예산 사업이 발생하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기준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성인지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 담당자들과 사업 선정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을 권고 함.

사업을 집행하는 실국 담당자들은 성인지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집행실적과 목적 달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성과목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권고함.

8.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율 저조 관련 권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회 참여율 / 기획조정실(총괄) 교통정책실, 안전총괄실,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경제정책실, 시민건강국, 문화본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정책실,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 노동민생정책관, 복지정책실, 행정국]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5개의 2018년 및 2019년 출자(연)금 및 2019년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율은 다음과 같음.

기관명 (담당부서)	출자(연)금		참석대상자	이사회		참여율
	2018년	2019년		개최회수	참여회수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과)	1,323	10,177	교통기획관	13	7	54%
			재정기획관	13	6	46%
서울시설공단 (건설혁신과)	-	-	재정기획관	10	5	50%
			안전총괄관	10	8	80%
에너지공사 (녹색에너지과)	-	186	재정기획관	7	1	14%
			대기기획관	7	3	43%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정책과)	2,197	4,891	주택건축본부장	12	2	17%
			재정기획관	12	0	0%
농수산식품공사 (도시농업과)	-	-	경제일자리기획관	7	4	57%
			재정기획관	7	0	0%
공공보건의료재단 (보건의료정책과)	38	36	시민건강국장	6	6	100%
			재정기획관	6	1	16%
			보건의료정책과장	3	2	66%

서울연구원 (조직담당관)	237	298	정책기획관	7	7	100%
			행정국장	7	7	100%
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	161	369	재정기획관	5	1	20%
			문화본부장	5	4	80%
			디자인정책과장	5	5	100%
서울장학재단 (교육정책과)	115	111	평생교육국장	4	2	50%
			감사담당관	4	1	25%
서울기술연구원 (안전총괄과)	67	109	안전총괄관	9	7	78%
			재정기획관	9	5	5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담당관)	71	89	여성가족정책실장	9	4	44%
			재정기획관	9	0	0%
			여성정책담당관	9	5	56%
(재)세종문화회관 (문화정책과)	288	328	문화본부장	3	1	33%
			문화정책과장	2	2	100%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과)	420	501	문화본부장	6	3	50%
			재정기획관	6	0	0%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정책과)	121	136	문화본부장	7	4	57%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과)	510	531	경제일자리기획관	3	2	66%
			재정기획관	3	0	0%
			경제정책과장	3	2	66%
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도시담당관)	23	84	스마트도시정책관	9	8	89%
			재정기획관	9	5	56%
			경제기획관	9	4	44%

			스마트도시담당관	9	5	56%
120다산콜재단 (시민봉사담당관)	242	220	시민소통기획관	4	4	100%
			재정기획관	4	0	0%
서울관광재단 (관광정책과)	13	361	관광체육국장	9	8	89%
			재정기획관	9	2	22%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48	66	노동민생정책관	10	9	9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9년신설) (복지정책과)	-	72	복지기획관	11	9	82%
			복지정책과장	11	8	73%
			재정기획관	11	0	0%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	45	50	행정국장	3	1	33%
			재정기획관	3	1	33%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	-	시민건강국장	7	6	86%
			중량구보건소장	7	5	71%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396	324	복지기획관	7	1	14%
			재정기획관	7	0	0%
			복지정책과장	7	2	2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과)	47	56	평생교육국장	5	5	100%
			재정기획관	5	1	20%
			평생교육국장	5	5	100%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인생이모작지원과)	135	142	복지기획관	9	9	100%
			재정기획관	9	2	22%
			인생이모작지원과장	9	6	67%

상기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자)금은 2019사업연도 현재 1조 9천 12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사회 평균 참석률이 50%에 불과하여 그 참석률이 매우 저조함.

공공기관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출연(자)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1차 심사(관할 실국)
- (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¹⁴⁾ 운영(공기업담당관실)
- (3) 공공기관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관할 실국)
- (4) 특정감사(감사위원회)
- (5)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공기업담당관실)

상기 절차들의 한계를 살펴보면,

- 가. 출연(자)금에 대한 예산편성 단계에서 심의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비해서 제한적이고,
- 나. 관할실국의 지도 및 점검은 필수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되는 경우가 없으며,

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외부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영평가 및 감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감사는 출연(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출연(자)금의 집행 사업연도 중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 참석은 공공기관 거버넌스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이사들이 이사회 참석을 소홀히 하였고, 담당실국에서는 이사회 참석률과 관련된 기초자료조차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 하는 등 공공기관에 투입된 혈세의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나. 시정권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나 예산심의 및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비교적 통제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요한 내부통제제도이자 예방적 감사의 수단인 이사회 참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임.

공공기관의 당연직 이사들은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각 기관의 운용과정을 평소에 잘 살펴보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직 이사 본인이 이사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직자가 대리 참석이라도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사회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할 것임.

35. 민자투자사업 부실화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불용 방지를 위한 실무지침 보완 및 문제해결 관리 강화 권고

[민간투자사업 / 기획조정실(총괄), 안전총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협약 민간투자사업 부실화 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불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재점검과 실무지침 보완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문제해결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 투자사업이 부실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협약서상 해지시지급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나 여전히 출구전략실행에 실패하여 2019년 예산 29,000,000천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전 단계에서 민원해소 방안 부재로 인해 강북지역 도로네트워크 연결 종합 진단 및 개선용역 이후로 연기되는 등 사업표류로 인해 보상비 지급 목적 예산 2,000,000천원이 2018년에 이어 연속 전액 불용됨.

민간투자사업 부실화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전액불용사례

(단위 : 천원)

민간투자사업명	과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영등포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배상금등	29,000,000	0	29,000,000
은평새길 조성	보상금	2,000,000	0	2,000,000

□ 영등포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 사업내용 : 연면적 9,385.90㎡ / 연장 182.75m
- 사업기간 : ' 11.10.07 ~ ' 31.10.06(20년)
- 총사업비 : 49,626백만원(' 19년 29,000백만원)
- 사업시행자 : (주)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 은평새길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통일로) ~ 종로구 부암동(자하문길)
- 규 모 : 폭 4차로, 연장 5.78km
 - 터널 3,238m/3개소, 지하차도 1,057.5m/2개소
- 총사업비 : 2,231억원(' 07.1월 불변기준가)
 - 재원분담 : 민간 1,830억, LH 401억(LH분담 한도 500)
- 통 행 료 : 소형 1,289원, 중형 1,295원, 대형 1,425원
- 사업시행자 : 은평새길(주)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단계, 설계공사단계, 시설 운영단계 등 각 단계별로 주민민원, 민간사업시행자의 파산, 협약위반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실무지침 및 문제해결 관리절차를 보완하여 이해관계자 범위확대에 따른 서울시의 추가 예산부담을 막고 사업 평가·승인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것을 권고함.

영등포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은 당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시행 되었으나 실질 사업내용은 민자 사업에 해당하여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진 것으로 파악됨. 민간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본금이 총사업비의

6%에 불과하거나 출자 시 서울시의 승인 없이 출자자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민간사업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뚜렷한 제재조치가 취해진 바 없음. 은평새길 사례와 같이 협약체결 전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민원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고 민간의 민원해결노력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함.

55. 도시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및 방재종합대책 수립 권고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안전총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지역재생을 위한 도로공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현황

구분	사업명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또는 계획)	예산집행(계획) 현황
1	서울제물포터널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님 · 설계용역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준하는 항목을 포함해 설계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함 (2015.3)	민간사업자 예산으로 시행
2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중 (2020.6. 완료예정)	용역비(137백만원) 집행예정('20.06.)
3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님 · 설계용역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준하는 항목을 포함해 설계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함 (2015.7)	민간사업자 예산으로 시행
4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시행예정(2021)	민간사업자 예산으로 시행

다만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설

계 및 건설기술심으로 대체되었음.

국회대로 지하화의 경우 민자 터널과 상부 지하차도 이중구조로 추진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사업의 경우 민자 투입 터널과 재정투입터널 이중구조로 추진할 예정이나 최근 5년간 도시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종합위험도평가나 종합방재대책 관련 예산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나. 시정권고

서울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의 경우 법 시행 전 착공되어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은 아니나 지하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공 전 설계 시 적용된 지하안전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지하화 된 도시고속도로와 상부구조물을 포괄하는 종합방재 대책 및 민간 관리운영사업자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비상대응체계 수립을 권고함.